

IMO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(FSI 20)

I. 일반사항

- 회 의 명 : IMO 제20차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(20th Session of Sub-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)
- 기간/장소 : '12. 3. 26~3. 30 (5일간)
IMO Headquarters, 영국 런던
- 참 석 자 :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상안전실
김규태 선임검사원

II. 주요 의제 목차

1. [의제 5]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
2. [의제 6]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
3. [의제 10] HSSC에 따른 검사지침 검토
4. [의제 12]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의 검토
5. [의제 13] RO Code의 개발

III.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5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

- 회원국의 해양사고조사보고서 품질
 - 지난 회기간 분석한 보고서 78개중 13개 (21%)의 보고서가 IMO 조사코드 기준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추진키로 함
 - * 지적사항 : 선원/작업사항 설명 부족, 기계적/인적/구조적 사고요인 설명부족,

- 사고재발방지 교훈 부재, 해당 첨부물 미첨부 등
- 회원국의 사고조사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문제점을 FSI Circular로 회원국 전파 및 feed-back mechanism 구축
- 사고 재발방지 교훈 검토
 - 회원국이 제출한 78개 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통신작업반(CG)이 도출한 33개 교훈 사항을 검토/수정하고, 동 교훈사항 전파 및 교훈 도출 분야를 확대키로 함
 - 교훈 전파 및 이행 촉진을 위하여 FSI 20차 결과 문서에 첨부(FSI 20 WP 참조)
- 법제고 개선사항 검토
 - 화물선의 H/C 운영 중 인명사고 발생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H/C 설치, 운영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(규정 검토/개정)을 위하여 DE Sub-Committee에 관련 사고사례 및 교훈 사항 제출키로 함
 - 어선의 작업중 어선원 피로 과다 및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저감을 위하여 ISM 적용 확대 등 해결방안을 위한 관련 자료를 GISIS에 등재해줄 것을 요청함(추후 재검토 예정)
- 해양사고 조사지침 개정안 검토
 - GISIS에서 사용하는 IMO 조사코드 일치 필요
 - A.849(20) 부속서 1의 Aide-Memoires를 추가 보완 필요
 - MAIIF의 인적요소 조사지침 등 개정안 마련
 - A.884(21) 부속서 4의 인적요소 조사 관련

- 사항 삭제 등
- RO-RO 여객선의 자동차 적재갑판 화물안 전규정 검토
 - RO-RO 여객선의 자동차 적재갑판에서 화재 발생시 안전한 항구까지 입항이 가능토록 하는 현행 화재보호설비 설치 규정이 2010. 7. 1 이후 건조선박에 적용되고 있어 현존선은 동화재보호 규정의 미적용으로 향후 선박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손실의 우려가 큰 바, 동 규정을 2010. 7. 1 이전 건조 RO-RO 여객선에 대하여도 적용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함(차기 통신작업반에서 검토)
 - ☞ 화재설비 관련하여 FSI 21차 및 FP Sub-Committee 동향 주시 필요
 - * 영국측은 동 시안을 FP Sub-Committee에 제출 예정임
 - GISIS 해양사고 모듈 개선방안
 - MSC-MEPC.1/Circ.4와 FSI 20/5 해양 사고 분석반의 작업내용을 기초로 하여 해양 사고 모듈의 사용방법 및 입력정보의 개선 방안을 제안
 - Casualty 모듈의 목적, 입력 필요한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결정 후 모듈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바 MEPC 64 검토후 통신작업반(CG) 종합분석하여 FSI 21차에서 재검토기로 함
 - 기타 대표단 활동
 - FSI 해양사고 관련 작업반 회의간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음. 아국 9월경 개최 예정인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관련 국제세미나 주제(안)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신작업반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함
 - * (주제안) IMO 조사코드에 따른 인적과실

- 조사 역량강화, VDR 및 VTS 등 자료의 해양사고 조사 활용 모범사례 공유
- 한/중/일 3자 해양사고 조사 협력망 구축 방안 검토 비공식 회의
- * (주요안건) IMO 조사코드 이행 및 역량강화 증진 협력, 자국내 상대국 선박사고 공동 조사 및 정보공유 협력 증진, 필요시 조사관 요청 등

의제 6	항만국통제(PSC)의 조화로운 시행
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 제5차 PSC MoU/Agreement 사무국과 정보 센터 이사 워크숍 결과 보고
 - 각 MoU/Agreement의 PSC 활동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보고의 방법, 형식 등을 위한 PSC Annual Report 형식 (Annex I)을 승인
 - 기국들의 GISIS “Contact Point 모듈” 최신화(list 최신화)를 상기기 위한 주기적인 노트를 보내도록 사무국에 요청함
 - 각 MoU CIC결과보고 양식(Annex II)을 승인함(Paris MoU에서 개발한 공동 CIC 방법 재검토)
 - 작업반(WG)에서 제출한 PSC Codes의 유지/관리를 위한 보고서 검토 및 관련사항 승인함
 - * (내용) 새로운 협약과 지적 Coding에 대한 IMO 사무국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, RO가 위임받은 증서, 서류 등을 추가 개정, PSC 절차서를 4년에 1회 나오는 통합본을 근간으로 2년마다 개정할 것 제안, 2011 PSC 절차서에 언급된 “Regional PSC Regime”에 대한 정의 추가 및 관련내용 검토 등
- EQUASIS 정보시스템

- 자료제공자에 대한 기준 및 현 자료제공자에 대한 소개
- Ver 2.5에 대한 소개('11. 9. 7부로 서비스 시작)
- 지역별 PSC 협의체의 진행보고서 검토
 - 현재 활동중인 협의체 소개(Paris MoU 포함 9개 지역별 PSC 협의체 활동중)
- PSC 자료교환 프로토콜
 - 지역별 PSC 협의체의 자료교환 합의와 관련한 논의사항 및 서명 등 설명(8개 PSC Regime이 자료교환 합의서에 서명함)
- 범세계적인 PSC 집중점검(CIC) 시행
 - 각 지역별로 시행중인 CIC를 범세계적으로 공동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,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각 MoU 지역협의체에서 시행하고 CIC 결과를 전문 위원회에 제공 요청함
- PSCO를 위한 선원의 자격, 휴식시간, 승무 정원에 관한 지침
 - Paris MoU에서 개발한 “PSCO를 위한 선원의 자격, 휴식/근로시간, 승무정원에 관한 검사 지침” 소개 및 이 지침을 참고로 “PSCO를 위한 선원자격, 휴식시간 및 최소승무정원에 대한 지침(안)” 마련 및 차기 회의시 추가 기술적인 검토기로 함
- MED MoU의 Decision-Support Tool 개발 소개
 - 지중해연안 PSC의 조화로운 시행을 목표로 SafeMed II Project에서 Med MoU PSCO를 위한 협약전산화 시스템(Decision-Support Tool)을 개발(ILO 협약과 IMO의 관련 요건을 바탕으로 함)
 - 타 PSC 지역협의체에게도 Decision-Support Tool과 같은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하여 고려 필요
- PSCO를 위한 ISM Code 지침 개발
 - 결함사항들이 명백한 근거 없이 선박안전관리의 문제로 인한 결함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음
 - ISM 심사자들에 의한 8~10시간이 소요되는 심사를 PSCO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
 - 관리 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장 심사 필요 유무에 대한 지침 부재
 - 결함사항 발생시 기국이나 RO의 귀책을 묻기 보다는 발견된 결함사항을 기국이나 RO에 알리고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ISM Code이행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 의견
 - IMO 지침에 맞게 부적합과 중부적합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ISM관련 출항정지 시 강제적인 특별심사 요건 개발에 대하여 권고함
 - ☞ 현재 Paris Mou에서 시행되고 있는 PSCO를 위한 ISM 지침으로 그 지역을 향해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
- 호주항 입항시 ECDIS(전자해도) 검사지침
 - SE 증서상 ECDIS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(종이해도 and/or 전자해도 사용여부)
 - (ECDIS 요건) 형식승인품 여부, 국제수로 기구(IHO) 최신규정 만족, 최신화된 ENC 사용, 독립된 예비 대체수단 확보 등
 - 협약 발효전까지 항해구역에 대한 ①최신 종이해도 비치 ② 형식승인된 ECDIS와 대체수단의 추가 ECDIS설치 ③ 형식승인된 ECDIS와 대체수단으로 최신화된 종이해도 비치해야 함
 - STCW Manila Amend에 따라 항해당직 갑판사관은 인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해야 함
 - ☞ 호주 입항선박은 호주 PSC ECDIS(전자

- 해도) 관련 집중항목에 대하여 사전준비 필요함
- Tokyo MoU의 2010 위험물산적 집중점검 캠페인(CIC) 결과보고
 - '10. 9. 1~11. 30까지 “포장형태의 해양오염 물질” 관련 집중점검 시행함
 - 4,079척의 점검으로 305개의 관련결함이 지적되었으며, 출항정지는 10척임
- Tokyo MoU 2011 활동 요약
 - (CIC관련) '09년도 “구명정 진수설비”, '10년도 “포장형태의 해양오염물질”, '11년도 “구조안전 및 만재흡수선”, '12년도는 Paris MoU와 동일한 주제의 화재안전시스템 (FSS) CIC 실시

의제 10 HSSC에 따른 검사지침 검토

- LSA 코드 개정 적용 기준일 관련한 논의
 - LSA 개정안의 발효 전 최초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대한 적용은 SOLAS Reg. Ⅲ/1.4.2 항의 마지막 문구와 적용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DE 전문위원회에 동 사안 검토 요청함
 - “선박에 설치된 구명설비” 정의에 대하여 동의함
 - * (정의) ①개정안의 발효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되는(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는 이후 건조되는) 선박의 경우, 설치된 모든 구명설비를 의미 ②개정안 발효 전에 최종 검사가 완료된 경우, 교체 또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명설비 ③건조중인 선박의 경우, 개정안 발효 후 24개월 이후에 [또는 주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는 24개월 전에] 설치된 구명설비

- HSSC에 따른 검사지침(Res.A.1053(27))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신작업반(CG) 의견 반영됨
- SOLAS 협약 및 관련 코드의 개정 초안 작업에 대한 안내서
 - MSC 89/3/2(사무국), MSC 89/3/3(아르헨티나), MSC 89/21(Annex 2 of the annex)의 3개 문서 모두 안내서 개발을 위해 추가 검토에 동의함
 - ☞ LSA 코드 개정 적용 기준일 및 LSA 코드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안내서 검토가 DE 57차에서 이뤄질 예정임

의제 12 IMO 강제협약이행 코드의 검토

-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(Ⅲ Code)의 채택 및 개정
 - MSC 89차 및 MEPC 62차에 의해 승인된 Ⅲ Code 초안에 대한 추가 개정 제안(강제요건은 “should”, 권고사항은 “is recommended 사용)에 동의함
 - Ⅲ Code의 승인 및 채택과 해당 IMO 강제협약 개정에 대한 시나리오(3가지)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, 편의치적국의 강력한 요구로 Ⅲ Code 발효시점이 가장 늦은 시나리오 3으로 추진 결정
 - Ⅲ Code 강제화를 위한 LL 1966 및 Tonnage 1969의 개정에 대한 명시적 수락 절차 및 만장일치 수락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
 - Ⅲ Code의 참조방법은 SOLAS의 IBC Code, IGC Code, HSC Code를 강제화시키는 동일한 방법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채택됨

* III Code의 향후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되로 새로운 버전의 III Code 채택 후 해당 IMO 강제협약을 개정하자는 옵션 1 채택됨

의제 13 RO Code의 개발

- RO Code 개정관련 통신작업반 결과보고
 - (논의쟁점) 품질검증 감사주체, RO의 귀책 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(Liability Limitation) 및 ISO 표준인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
 - (RO Code의 구성) 총 3부로 구성, 제1부 일반 규정, 제2부 기국 및 RO에 대한 강제규정, 제3부 기국의 RO 감독(Oversight) 지침
 - (부록) 제1부 일반규정에 추가됨, 부록1은 RO 기술직 직원의 교육 및 자격기준, 부록 2는 RO 조직의 기능적 요건, 부록3은 주관청과 RO 간의 기본 협정서 포함
 - RO Code 개발은 RO에 관한 기존 IMO 협약을 통합하기 위함
 - (RO 감사제도) ①RO가 품질시스템을 통하여 RO Code 요건을 준수함을 검증 ② RO와의 협정서에 따라 주관청의 지침을 RO가 준수함을 검증
 - ISO 표준인용에 대하여 사무국과 ISO간 사용 교섭이 완결되면, MSC 91('12) 및 MEPC 64('12)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 예정임
 - * 품질시스템 검증은 감사(심사)를 기반으로 하며, ISO9001인증과 같이 주로 공인인증 기관(ACB)에서 수행하며, 주관청은 직접 또는 ACB감사를 통하여 QSS감사를 시행할 수 있음
 - ☞ RO의 감사주체는 기국의 고유권한으로 기국의 판단에 따라 선택 실시토록 하고,

RO의 책임도 기국의 권한으로 기국이 국내법화, 책임제한 시 참고토록 Part III (비강제)에 각주형태로 포함 예정

- RO Code의 채택, 개정 및 강제화를 위한 IMO협약의 개정
 - SOLAS, MARPOL 및 ILL 협약을 개정하여 묵시적 찬성 표준절차에 따라 RO Code를 강제화하여야 함
 - (RO Code 수용할 결의서) 옵션 1 MSC-MEPC 결의서, 옵션 2 MSC 결의서 및 MEPC 결의서 각각, 옵션 3 총회결의서
 - (RO Code 강제화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협약) 1974 SOLAS, LL PROT 1988, MARPOL Annexes I, II, IV & VI
 - (RO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협약) Tonnage 1969, LL 1966, AFS 2001, BWM 2004 (미발효), HK Convention 2009(미발효)
 - RO Code 시행 추진 일정표

IMO 회의	일 정	조치(옵션 : MSC-MEPC 통합 결의서)	조치(옵션: MSC 및 MEPC 별도 결의서)
FSI 20	2012. 3	1) RO 코드 및 결의서 : 초안 완료 2) SOLAS, LL, MARPOL 협약 : 개정안 완료	좌동
MSC 90	2012. 5	1) 승인 (RO 코드 및 결의서) 2) 승인 (SOLAS, LL 개정)	좌동
MEPC 64	2012.10	1) 승인 (RO 코드 및 결의서) 2) 승인 (MARPOL 개정안)	좌동
MSC 91	2012.11	1) 결의서(RO 코드) 채택 - MEPC 채택 조건부 2) 채택 (SOLAS, LL 개정)	1) 결의서 채택 2) 좌동
MEPC 65	2013. 6	1) 결의서(RO 코드) 채택 2) 채택 (MARPOL 개정)	좌동
A 29/이후	2015 이후	개정협약 발효 후 현행 RO 관련 협약 폐기	좌동

- RO Code 초안에 대한 의견
 - RO Code 텍스트의 용어, 문구의 명료, 정확 및 일관성 차원에서 검토·수정함
 - 위임(Authorization)에 규정을 제2부로

통합하고, 제3부는 RO의 감독(Oversight)만 다루도록 수정함

- RO 감독 관련하여 RO Code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선급업무까지 기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명시한 규정 유지
- RO의 부주의 및 부작위로 인한 소송사례에서 RO 책임한도에 주목함
- (안전) ①안 : 법정증서 발행 및 서비스 업무에 관련되거나 책임있는 RO 및 피고용자에 대하여 기국법에 따라 전문 보상/책임 보증을 통하여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와 관련 기국은 그 보험 또는 다른 조치하에서 책임/보상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. ②안 : RO의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손상에 대한 책임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기국에 부과된 경우, 법정 증서발행 및 서비스 업무에 관련되거나 책임있는 RO 및 피고용자에 대하여 기국법에 따라 전문 보상/책임 보증을 통하여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와 관련, 기국은 그 보험 또는 다른 조치하에 책임/보상의 수준을 제한할 수 있다.
- ☞ 책임 규정을 각주에 추가(안전 2개의 텍스트 중 택일)할 것을 MSC, MEPC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상정 예정인바, 책임제한을 다루고 있는 LLMC, CLC 및 UN국가주권면제협약 등을 검토하여 RO의 책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논리가 명확한 입장을 도출하기 위하여 차기 MSC/MEPC 위원회 논의에 대비 필요함

기 타 참고사항

- 협약 비전용 선박 안전기준(Non-mandatory

GlobalReg) 개발 제안(프랑스)에 대해 MSC 91(12, 11) 보고 후 위원회 지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협약 비전용 내항선박 등 국내안전 기준 마련시 기술문서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논의사항에 주목

- MEPC/Circ.318에 따른 2011년도 회원국의 강제보고사항을(MARPOL) 제출이 저조하여 제출기한 내에 보고토록 촉구함
- 선원 근무시간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PSC 점검지침 개발 현황에 대하여 정보제공
- 통합감사결과요약보고서(CASRs)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
- 주요 국제해사협약의 비준을 저조에 따라 원인 분석 및 비준을 증진을 위한 회원국 활동 사항 등에 대한 소개함
- 비규제/미보고 불법어업(IUU) 및 관련사항에 대한 FAO/IMO 제3차 합동작업반 회의 준비에 관한 정보제공
- “해상에서의 피구조자의 하선에 관한 절차” 지역적 업무 체결서 초안 개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(FAL 37차 결과보고)
- GISIS(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)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현재 PSC 등 20개의 모듈이 운영중이며, 6개 모듈이 추가 개발중임

향후 조치계획

- 허베이스프리트호 해양사고보고서(최종) 제출 및 대응(13. 3)
- 회기간(FSI 20~FSI 21) 통신작업반 참여
 -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
 - HSSC(검사조화제도)에 따른 검사지침 개발
 -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